



COVID-19의 통제를 위한 보건 담당관 명령 제 20-06f 호 공중 보건 비상 **예방 격리** 명령
 (HEALTH OFFICER ORDER FOR THE CONTROL OF COVID-19 No. 20-06f)
 발령 일자: 2020년 4월 3일 발령, 2020년 5월 3일, 2020년 6월 8일, 2020년 7월 27일,
 2020년 12월 24일 개정

본 명령은 보건 담당관의 서면 해제가 있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명령의 개요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은 알라메다 카운티 내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입니다. COVID-19는 밀접 접촉이 있는 사람 사이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은 과학적 증거 및 COVID-19에 노출로 인해 발병되는, 예방이 가능한 중증 또는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의 취약한 일원을 보호하는 데 현재 알려져 있으며 가용한 최상의 실행에 기반하여 발령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카운티”) 인구 중 상당한 일부가 이들의 연령, 조건 및 건강 상태로 인해 사망을 포함한, COVID-19로 발병되는 극심한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실은,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전염성이 있는 감염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증상, 경미, 심각), 모든 COVID-19 감염자는 취약한 사회 일원을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을 감속하고,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Alameda County 내 보건 의료 체계가 압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Alameda County Public Health Officer (“Health Officer”; 보건 담당관[“보건관”])으로 의해,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된 사람의 예방 격리가 의무화됩니다. 예방 격리는 COVID-19에 노출된 사람이 질병을 전파하는 위험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들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합니다. 본 지시에 정의된 공안 부문 (Public Safety Sector)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무증상이며, 근무지의 완화될 수 없는 직원 부족으로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구성된다면, 예방 격리 기간 도중,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고용주 및 근무자는 United Stat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발행의 추가적 **예방책**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제 101040 절, 제 101085 절 및 제 120175 절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S 101040, 101085, AND 120175,
 THE COUNTY OF ALAMEDA HEALTH OFFICER ORDERS)에 따른 권위로,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COVID-19 확진자 가정의 모든 일원, 친밀한 파트너, 간병인 및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자는 반드시 자가 예방 격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본 명령 및 본 명령에 참조된 공중 보건 지침 문서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를 것이 요구됩니다.

본 명령의 위반은 최대 \$10,000 의 벌금 및/또는 징역 1 년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보건 안전법 §§ 120295 이하 참조: 캘리포니아 형법 §§ 69 & 148)

***COVID-19 확진자 가정 내 접촉자, 친밀한 파트너, 간병인 및 밀접 접촉자 예방 격리 요건
(Quarantine Requirements for Household Contacts, Intimate Partners, Caregivers, and Close Contacts of Persons with COVID-19)***

COVID-19 확진자(“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확진자의 주거지에 거주(Live in)하거나 머무른 경우 또는
- 확진자의 친밀한 성 파트너(intimate sexual partners)의 경우 또는
- 마스크, 가운 및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진자에게 간호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경우 또는
- 확진자로부터 6 피트 이내에서 장기간(15 분 이상)을 보내는 경우. 하루 이내에 15 분까지 합산되는 누적 노출(Cumulative exposures)은 밀접 접촉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확진자의 전염성이 확인된 기간 도중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는 증상이 시작한 시점에서 48 시간 이전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전염성을 지닙니다.

COVID-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즉각 다음을 실행해야 합니다:

1. COVID-19 에 감염되었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마지막 접촉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간 집에 또는 또 다른 거주지에 머무릅니다. 0 째 날(Day 0)이 마지막 노출 시점이며, 10 째 날(Day 10)이 예방 격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2. 14 일간의 예방 격리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과 정기적인 밀접 접촉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노출 시점으로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 예방 격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는 전문 요양 시설(nursing facilities), 교화 시설(correctional facilities),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위한 보호소(shelter for unhoused persons) 및 기숙사(dormitories)와 같은 집합 거주 시설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3. 예방 격리 중인 사람은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예방 격리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며, 다른 공공 또는 사유의 장소에 출입하여도 안 됩니다.
4. <https://covid-19.acgov.org/isolation-quarantine#quarantine> 에서 “자택 예방 격리 지시문”(Home Quarantine Instructions)에 제시된 요건을 주의해서 검토하고 철저히 따르십시오.
5. 예방 격리 중인 사람이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또는 기타 COVID-19 증상으로 몸이 아파질 경우(증상이 대단히 경미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자택 격리하며 <https://covid-19.acgov.org/isolation-quarantine> 에 게시된 “자택 예방 격리 지시문”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COVID-19 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취약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위기적인 직원 부족 기간 동안, 의료인 및 비상 대원, 그리고 아동 복지계(child welfare system) 또는 원호 생활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고객과 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 종사자는 5 일째 되는 날 이후에 시행한 비강 면봉 검사(PCR test)에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마지막 노출 시점으로부터 7 일째 되는 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본 항 하에 7 일째 날 복귀가 허락되는 근무자는 반드시 근무 시간 동안 항상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노출 시점으로부터 14 일째 날까지 근무 시간 외에는 예방 격리를 계속합니다. 본 항의 목적으로, 더 이상 환자, 거주자 또는 입원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이 부족하며, 본 예외가 아니었다면 달리 예방 격리하고 있을 근무자의 복귀 없이, 상황이 완화될 수 없는 시점에 “위기적인 직원 부족”(“critical staff shortage”)이 발생합니다.
7. 14 일째 날 이전에 예방 격리를 마치는 모든 사람은 14 일째 날까지 항상 얼굴 가리개 착용, 다른 사람에게서 최소 6 피트 거리 유지 및 본인의 COVID-19 증상 관찰을 포함한, 권고된 모든 비약물적 조정 사항을 철저히 고수해야 합니다.

오직 아래 정의된 공안 부문(“Public Safety Sector”)에 종사하는 필수 근무자 또는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근무자만이, 그리고 **오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방 격리 기간 도중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1. 노출 여부에 불구하고 “무증상”(“asymptomatic”)인 근무자.
2. 본 지시의 목적으로 다음을 의미하는 공안 부문(Public Safety Sector)에 종사하는 근무자
 - a. 연방, 주 정부 및 지역 법률 집행기관
 - b. 911 콜 센터



- c.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위험물 처리반
- d. 응급 의료 요원 소방원 (EMT firefighters)

또는

근무자가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함.

근무자가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할 경우, 환자의 안전 보장이 불가능해지는 직원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기 7 일간의 예방 격리 전을 고수해야 하며,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무자의 7 일째 날이 되기 전, 여러 다른 날에 걸쳐, 여러 번 비강 면봉 검사(PCR test)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3 일째 날, 5 일째 날).

- 3. 본 예외가 아니었다면 달리 예방 격리하고 있을 근무자의 복귀 없이는 완화될 수 없는 위기적인 직원 부족의 경우.
- 4. 이러한 위기적인 직원 부족으로, 공공 안전 또는 환자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구성될 경우.
- 5. 본 조항 하에 먼저 직장에 복귀하는 근무자는 오직 공안 부문(Public Safety Sector) 또는 의료 부문(health care sector) 직원 부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예방 격리 상태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는 예외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방 격리 규제에 계속하여 해당됩니다.

예방 격리 기간 도중 직장 복귀가 허용되는 공안 부문 종사자는 예방 격리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자택을 떠나기 전, 체온 및 증상 점검을 포함한 자가 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무자는 14 일 기간에 남는 기간 동안 수술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공안 부문의 고용주는 예방 격리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본 예외가 아니었다면 달리 예방 격리되어야 하는 직원이 근무지에 출입하기 전, 증상 점검을 포함한 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무자는 양측 모두 하루 종일 근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자가 근무 도중 증상을 발달할 경우,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 보건 담당관의 격리 명령 및 지침(Health Officer's Isolation Order and Guidance)을 따라야 합니다.

본 명령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에 불복종할 경우, 보건 담당관(Health Officer)은 민간 구류, 또는 이들에게 보건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 머무르도록 요구하기를 포함한 추가적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의 위반은 또한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의 처벌이 가능한 경범죄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N. J. Moss'.

Nicholas J. Moss, MD, MPH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 담당관

2020년 12월 24일
일자